

[일련번호 : 1]

경 기 도 체 육 회

개 선 조 치

[제 목] 규약 관리 소홀

[소 속 기 관] 경기도요트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요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요트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협회는 「규약」 및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조직 운영에 있어 본회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제52조(규약 변경),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에는 기본적인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지침에 대한 내용과 규약, 규정 등의 제·개정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결과 규약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2가지의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가. 규약 최신화 소홀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제1항¹⁾에 의거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규약은 ****년 *월에 승인된 규약으로 협회가 따라야 하는 대한요트협회 규약(****년 **월 개정)이나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년 *월 개정)에 의거 개정해야 할 항목들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규약 내 세일링-요트 단어 혼재

협회는 ****년 *월 **일 대의원총회를 거쳐 기존 ‘경기도세일링연맹’으로 사용하던 명칭을 ‘경기도요트협회’로 변경하였다. 세일링-요트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혼선을 피하고 종목 홍보를 위해 상위 단체인 ‘대한요트협회’를 따라 명칭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협회는 「규약」 내 ‘요트’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세일링(요트)’라고 표기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조치사항] 경기도요트협회장은

다음의 2가지 미흡한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조치하고 본회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약(기본규정) 최신화 소홀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규약변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① 도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나. 규약 내 세일링-요트 단어 혼재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3조(규정 등 제정·개정) 및 대한요트협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규약 내 ‘세일링’ 단어가 혼재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요트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요트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요트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인 각종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 「규약」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²⁾,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³⁾,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⁴⁾ 등에 따라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 2)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경기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법제상벌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⑤ 협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3)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협회는 협회, 시·군요트협회 등의 각종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중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위해 이사회는 자문기구로서 각종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협회는 이사회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는 각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대회, 장학금 등 협회 자체 기준으로 선발 및 추천을 실시하고 있다.

[조치사항] 경기도요트협회장은

협회 「규약」에 따라 이사회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스포츠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가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일련번호 : 3]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문서(기록물) 관리 소홀

[소 속 기 관] 경기도요트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요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요트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⁵⁾에 따라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 관리하고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예산지원도 함께 진행하여 협회의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5)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22.04.07. 신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보조금 및 자체비 등 기록물 관리를 ○○○ ○○○○○를 통해 관리하고 있고 기록물을 경기도체육회관 8층 사무실에 일부 보관하는 등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무실이 3곳⁶⁾으로 나누어 운영하다 보니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요트협회장은

협회의 사무실 운영에 대한 특색을 반영하여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2023년 하반기(7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기록물 관리를 철저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협회사무국 및 사업운영 지역: 수원시(경기도체육회관), 평택시(평택호 훈련장), 김포시(김포아라마리나)

[일련번호 : 4]

경 기 도 체 육 회

권 고 조 치

[제 목]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소 속 기 관] 경기도요트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요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요트협회 규약」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규약」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¹⁾에 따라 협회는 회계 업무 수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회계 규정」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²⁾에 따르면, 회계 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안정적인 사무국 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보증에 가입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회계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1) 「경기도요트협회 규약」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경기도체육회 「회계규정」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 등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체육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일 현재 협회는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관계직원에게 해당하는 사무장, 사무국장, 회장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요트협회는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보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사항] 경기도요트협회장은

직무관련 재산상 사고에 대비하여 협회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고 회계관계직원의 소신과 책임 있는 회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